

「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3. 11. 22.
- 회부일자 : 2023. 11. 27.

### 2. 제안이유

- 비대면·무인 시스템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바, 기존의 성인문해교육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성인문해교육 정의에 ‘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’ 포함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4조)
- 추진 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을 추가(안 제5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○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정의하는 “문자해득교육” (이하 “문해교육”이라 함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일컫고 있으며,

교육부는 ‘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’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.

#### < 2023년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영역 >

구분	디지털 기초 문해	디지털 일상생활 문해	디지털 직업·생활 문해
주요 내용	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수업	키오스크 주문, 은행 및 배달 앱 이용, SNS 소통, 지도 서비스 이용 등	디지털 경제활동(자산관리, 구직활동 등), SNS 콘텐츠 활용, 전자문서 작성 등

### 나. 입법의 취지

○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키오스크 및 앱 서비스 이용 등의 디지털 문해 능력이 요구되는 바,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의 성인문해교육 및 비문해자의 정의를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정의함.
- 안 제5조(사업추진 및 범위)에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현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및 프로그램 이용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입법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고, 상위법 등의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